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가해자의 처분·석방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 통보〉
■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464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윤 상 열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1.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 대상 주요 결정 통지 내용 관련 조문 10
2.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관련 규정:
「형사소송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관련 법령 1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전진속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2025. 11. 21.
3. 회 부 일: 2025. 11.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피해자는 대부분 가해자와 가족·배우자 관계 등 친밀한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특성상, 가해자의 처분이나 석방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면 재접근·보복 범죄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위험이 있음.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잠정조치 및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해자의 훈방, 불기소, 보호처분 종료, 가석방, 석방 등에 대한 자동통지 규정이 부재하여, 피해자가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의 처분·석방 정보를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범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가정폭력사건에서 법원, 사법경찰관 등이 가해자의 훈방, 불기소 등 신변 변동사항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자동 통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임.
- 구체적으로,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입건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종결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결정이 취소되거나 그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안 제29조제3항),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하는 때에는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함(안 제47조제2항).
- 임시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장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에는 이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함(안 제29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7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생략) <u><신설></u>	제7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입건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종결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때에는 그 보호시설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u><신설></u>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함에 있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형태로 통지할 수 있다.
<u><신설></u>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절차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의 요건과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임시조치) ① · ② (생략)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결	제29조(임시조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현행	개정안
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 ⑫ (생략) 제29조의2(임시조치의 집행 등) ① . ② (생략) <신설> <신설> 제47조(보호처분의 종료) (생략) <신설> <신설> <신설>	-----경우 및 제11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이 취소되거나 그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 ④ ~ ⑫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임시조치의 집행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장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에는 이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에 있어서는 제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7조(보호처분의 종료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때에는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에 있어서는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절차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의 요건과 방식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은 제15조(이송), 제29조(임시조치), 제37조(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 대상 주요 결정 통지 내용¹⁾>

구분	근거규정	통지내용	통지자
사건의 이송	제15조제2항	법원이 이송결정을 한 경우 그 사유	법원
임시조치 결정	제29조제3항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격리, 접근금지 등)의 결정	법원
심리기일 지정·변경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가정보호사건의 심리기일 지정·변경 통지	법원
불처분결정	제37조제3항	가정보호사건 심리 결과 불처분결정	법원
보호처분결정	제40조제4항	보호처분의 결정	법원
보호처분변경	제45조제3항	보호처분의 변경결정	법원

○ 가정폭력사건에서 정식 입건 이전에 가해자 훈방, 임시조치 중단, 보호처분 종료 등의 경우에는 수사기관 등이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이런 경우 피해자 등이 직접 신청해야만 해당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구조임²⁾.

○ 현행 제도로는 가해자의 소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보복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관련 제도의 정비 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³⁾.

1) [참고자료 1]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 대상 주요 결정 통지 내용 관련 조문

2) 현행 규정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에 한정될 뿐,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해자에 대한 훈방 처분 사실(정식 입건 없는 석방) 등에 대한 정보는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되지 않음.

□ 개정안은 미입건 조사종결, 임시조치 결정취소, 임시조치 중단, 보호조치 종료 등에서의 가해자 처분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통지함으로써 정보 공백기에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법」⁴⁾, 「형사소송법」⁵⁾ 등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본인의 사건 진행 상황이나 가해자 신병 상태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나⁶⁾,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곤란하고 자동통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는 있음.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현행 관련 규정에 통지의무를 명시하여 이를 담당하는 기관과 피해자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

3) 「친밀 관계 폭력과 보복 방지: 가해자 출소·석방 통지 의무화 입법 방안」(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 2025.11.2.).

4)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①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5)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급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참고자료 2]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관련 규정: 「형사소송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관련 법령

□ 다만, 개별 법률에 사안에 따라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각각 규정할 것인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법」⁷⁾에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로,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안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다수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피해자 통지 관련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발의 현황>

(2026.8.31. 현재)

의안명	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9인	2025. 1.13.	-국가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정보를 고지 의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의 신청으로 재판 및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병(身柄)에 관련된 변동 상황을 범죄피해자에게 통지
	이건태의원 등 10인	2025. 1.16.	국가는 범죄피해자에게 해당 사건의 수사진행상황, 수사결과,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통지
	이주희의원 등 11인	2025.11.27	수사기관, 법원, 교정기관 및 보호관찰기관은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

7)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안명	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실을 해당 시점에 범죄피해자에게 안내 의무
	조계원의원 등 12인	2025.11.28.	국가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황을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	2025. 6.27.	법원은 판사가 임시조치의 취소·변경·연장 등의 결정을 할 때 검사와 피해자, 가정폭력행위자(아동학대행위자) 및 그의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관할경찰관서의 장도 통지 대상에 포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	2025. 6.2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2026. 8.14.	검사는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 의무. 단,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 한편, 개정안은 통지의 방법, 절차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상 통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절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통지 방법 및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관련 규정을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상 통지에도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경찰청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
규정을 추가·신설하여 재접근·보복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 수사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경찰수사규
칙) 및 경찰청 훈령(범죄수사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사법경찰관의 통지 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 소관 하위법
령에 세부절차를 위임하는 것은 기관 간 권한과 책임에 불일치 문
제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4465
호)도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 심사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자료 1]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 대상 주요 결정 통지 내용 관련 조문

제15조(이송) ① 가정보호사건을 송치받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한 조사·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사건을 즉시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송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첨부하여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② (생략)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 ⑫ (생략)

제30조(심리기일의 지정) ① 판사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가정폭력행위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요지 및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리기일은 보조인과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심리기일의 변경)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가정폭력행위자나 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기일을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및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습벽(習癖)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②·③ (생략)

④ 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상담소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⑥ (생략)

제45조(보호처분의 변경) ①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차례만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2]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관련 규정: 「형사소송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① 국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2.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법 제8조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이하 “형사절차 관련 정보”라 한다)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사 관련 사항: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등 결과
2. 공판진행 사항: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主文),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3. 형 집행 상황: 가석방·석방·이송·사망 및 도주 등

4. 보호관찰 집행 상황: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개시일 및 종료일, 보호관찰의 정지일 및 정지 해제일 등

② 형사절차 관련 정보는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도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요청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으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형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서면, 구두, 팩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대검찰청예규)

제15조(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① 검사 또는 수사관은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가 기재된 별지 제4호의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1부를 범죄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1부는 서식 하단의 확인자란에 범죄피해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 한다.

1.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2.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보

3. 기타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24조(형사절차 정보제공) ① 검사 또는 수사관은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에게 가해자(피해를 가한 피의자·피고인에 한한다)에 대한 사건접수배당, 사건결정결과,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집행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가해자의 구속·석방 등 신병에 관한 상황, 출소 등 형집행상황에 관한 정보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공한다.

②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가 제1항의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거나 정보제공으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신청 또는 제2항의 정보제공 불원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별

지 제15호 ‘형사절차 정보제공 신청(불원)서’를 작성하여 민원실 또는 피해자지원실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구두·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범죄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제공에 대한 신청(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15조(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정보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늦어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1항에 따른 결정(이송 결정은 제외한다)을 하기 전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권, 신뢰관계자 동석권 등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2. 범죄피해자구조금, 심리상담·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제도 및 지원단체에 관한 정보
3. 배상명령제도, 긴급복지지원 등 그 밖에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16조(정보제공절차) ① 제15조의 정보제공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내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경찰관은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인신매매, 성매매 피해자에게 제1항의 방법으로 정보제공 시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의 서식 중 각 유형에 해당하는 안내서를 추가로 교부한다.

③ 경찰관은 피해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전화, 모사전송,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051